



#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

2016. 09. 29. 제정

**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** (사)스페셜올림픽코리아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 정관 제 35조에 따라 경기력향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정관 제6조 제1호, 제2호, 제3호, 제5호, 제7호, 제11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사, 연구, 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대표선수 경기력향상 기본계획
2. 스페셜올림픽 각종 국제대회, INAS 각종 국제대회 대비 강화훈련계획 수립
3. 스포츠과학의 연구 지원 및 현장 적용에 관한 사항
4. 경기지도자의 육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
5.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대표선수 훈련, 참가 임원 및 선수선발에 관한 사항
6.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대표선수 훈련의 지도, 감독,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
7. 우수소질 보유자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
8.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대표선수 훈련 참가임원 및 선수의 상벌에 관한 사항
9. 기타 발달장애인 체육 발전에 관한 사항

**제4조(구성)**

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 원 장 1인
2. 부위원장 2인
3. 위원 12인 이내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
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회장이 본 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

③ 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⑤ 위원회 구성시 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인원수의 30%를 초과할

수 없다.

#### 제5조(임기)

-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단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-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#### 제6조(위원의 해촉)

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2. 위원이 질병, 해외출장,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#### 제7조(운영)

-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장이 유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한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#### 제8조(소위원회의 설치)

- ①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종목별 소위원회(비상설)을 둘 수 있다.
- ②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.

#### 제9조(긴급한 업무처리)

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#### 제10조(운영경비 등의 지원)

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참석수당, 활동경비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#### 제11조(제척 및 회피)

위원은 본인,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## 부 칙 (2016. 09. 29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